

학사조직개편및학생정원조정규정

2024.09.25.제정	2018.07.01.일부개정	2018.12.21.일부개정	2019.09.25.일부개정
2019.10.01.일부개정	2020.03.01.일부개정	2021.06.01.일부개정	2022.04.01.일부개정
2023.06.29.일부개정	<u>2025.10.14.일부개정</u>		

<미래전략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육의 내실화와 특성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칙 제2조 및 제4조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4.)

1. “학사조직 개편”이라 함은 학칙 제2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 학부, 학과 또는 전공으로 편성된 조직의 명칭변경, 소속변경, 계열변경, 신설, 통합, 분리 및 폐지를 말한다.
2. “학생정원 조정”이라 함은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증원 또는 감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모집단위”라 함은 학칙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한 학부, 학과, 전공 등을 말한다.
4. “통합”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모집단위를 하나로 합치는 경우를 말한다.
5. “분리”라 함은 하나의 모집단위를 2개 이상의 모집단위로 나누는 경우를 말한다.
6. “폐지”라 함은 모집단위의 향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 경우(입학정원 0명)를 말한다.
7. “신설”이라 함은 모집단위 통합, 분리 없이 신규로 신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8. “전공 자율선택 모집단위”라 함은 입학 이후 둘 이상의 단과대학 소속 모집단위 중 선택할 수 있는 모집단위를 말한다.
9. “통합정원 모집단위”라 함은 동일한 단과대학 내에서 입학정원을 통합하여 모집하는 학과를 말한다.

제3조(학사조직 개편 및 학생정원조정위원회) ① 학사조직 개편 및 정원조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조직 개편 및 학생정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처장, 학생처장, 입학홍보처장, 각 단과대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각 단과대학 별로 복수의 교원을 추천하고, 추천된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7.1., 2019.10.1., 2021.6.1.,2022.4.1., 2025.10.14.)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서기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9.25.)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학사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
2.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3. 모집단위 평가에 관한 사항
4. 학사조직 개편 및 학생정원조정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학사조직 개편 및 정원조정으로 인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사조직 개편 및 정원조정과 관련한 사항

제4조(위원회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절차) 학사조직 개편 및 정원조정은 각 학사조직의 요청 또는 대학의 정책에 따라 필요할 때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5.10.14.)

1. 모집단위 평가 실시
2. 학사조직 개편 및 정원조정 계획 수립 및 심의
3. 모집단위 의견수렴
4. 위원회 심의
5. 학칙개정안 교무위원회 심의
6. 학칙개정안 대학평의원회 심의
7. 정관시행세칙 제5조에 규정한 총 정원조정 및 학과, 학부, 대학의 개폐에 관한 사항일 경우 법인이사회 의결
8. 관할청 보고 또는 승인(필요시)

제6조(모집단위 평가 및 조정계획 수립) ① 대학은 전 모집단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최근 2년간 대학정보공시지표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8.12.21.)

1. 정원내 신입생충원율
2. 정원내 재학생충원율(단, 신설 후 6년 이내 모집단위의 공시 기준일 현재 군 휴학생은 재학생으로 간주한다.)
3. 최근 3년 이내 증원한 모집단위의 경우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3.06.29.)
가. 정원내 신입생충원율: 최근 3년 모집정원의 평균을 당해 모집정원으로 적용한다.
나. 정원내 재학생충원율: 증원 후 2년간 편제정원은 증원 전 편제정원을 적용한다.
4. 신설, 통폐합, 분리 등으로 지표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23.06.29.)

② 삭제 <2023.06.29.>

③ 대학은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학사조직 및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각 모집단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학사조직 명칭변경 등) 학사조직의 명칭, 소속, 계열변경과 단과대학, 학부의 통폐합은 학사조직의 요청이 있거나, 대학의 정책에 따라 필요할 때 실시하며, 정부정책,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심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10.14.)

제8조(모집단위 신설) ① 모집단위의 신설은 정부정책, 대학 특성화 정책에 부합하고, 산업과 사회의 수요를 반영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공분야에 한하여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② 모집단위의 신설은 학사조직의 요청이 있거나, 대학의 정책적 필요시 시행하며, 추진 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설제안서를 기획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01., 2021.6.1.)

제9조(모집단위 통합) ① 모집단위의 통합은 각 모집단위의 요청이 있거나 대학의 정책적 필요시 2개 이상의 모집단위가 유사하거나 융복합이 가능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모집단위 평가결과 정원내 신입생충원율이 90% 미만이거나 정원내 재학생충원율이 90% 미만인 모집단위에 대하여는 유사 모집단위로 통합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제10조(모집단위 폐지) ① 모집단위의 폐지는 제6조에 따른 모집단위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1. 모집단위의 정원내 신입생충원율이 90% 미만이거나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이 90% 미만으로 2년간 지속될 경우

2. 삭제

② 위원회는 폐지대상 모집단위에 대하여 ‘모집단위 발전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의하고,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폐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차년도 평가시 모집단위 발전계획서 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모집단위를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③ 폐지되는 모집단위 소속 전임교원의 신분은 유사 모집단위로의 소속변경과 전공전환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되, 관련 법령, 정관 및 교원인사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제11조(모집단위 최소정원) 모집단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정원은 계열 구분 없이 3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의 정책적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감할 수 있다.

제12조(모집단위 정원의 증원과 감원) ① 위원회는 모집단위의 요청 또는 정책적 필요시 정부정책, 대학 특성화 정책에 부합하고, 산업과 사회의 수요를 반영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공분야에 한하여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06.29.)

② 삭제 <2023.06.29.>

제12조의2(모집단위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순서) 모집단위 평가결과 정원내 신입생충원율이 90% 미만이거나 정원내 재학생충원율이 90% 미만인 모집단위에 대한 조치는 감원 또는 통합, 폐지의 순서로 진행한다. (신설 2018.12.21.)

제13조(조치사항 및 특별지원) ① 대학은 학사조직 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소속 학생의 불이익이 없도록 학칙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모집단위 신설, 통합 및 폐지에 따른 모집단위의 경쟁력 확보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관련 모집단위 및 유관부서 협의를 거쳐 행·재정적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전임교원 전공전환) ① 학사조직 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전임교원의 전공전환이 필요할 경우 「교원연구년제규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교원연구년제를 신청하여 전공전환을 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전공전환을 위한 연구년의 경우 「교원연구년제규정」 제2조 내지 제4조의 연구년 기간, 자격 및 인원 배분에 관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년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전공전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세부사항) 학사조직 개편 및 정원조정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5학년도 학사조직 개편 및 정원조정에 대한 경과조치) 2015학년도 학사조직 개편 및 정원조정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2016학년도 학사조직 개편 및 정원조정에 대한 적용례) ① 이 규정은 2016학년도 학사조직 개편 및 정원조정부터 적용한다.

② 2016학년도 정원조정 시 모집단위 평가를 위한 가중치는 제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4학년도 실적을 70%, 2013학년도 실적을 30%를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하되, 2019학년도 모집단위 평가부터 적용

하며, 2021학년도 학사조직 개편 및 학생정원조정 시에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신설 또는 통합한 모집단위가 제10조의 폐지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설 또는 통합 후 6년 이내의 기간 동안은 <표 1>과 같이 모집단위 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표 1> 신설 또는 통합 모집단위의 폐지 유예 가능 학년도

연번	모집단위	신설/통합	신설/통합 년도	유예 가능 학년도
1	기계공학부	통합	2016	2021학년도까지
2	전자및의용공학부	통합	2017	2022학년도까지
3	디지털미디어공학부	통합	2017	2022학년도까지
4	국제물류학과	통합	2017	2022학년도까지
5	복지건강학부	통합	2017	2022학년도까지
6	글로벌문화콘텐츠학부	통합	2017	2022학년도까지
7	자율융합공학부	신설	2017	2022학년도까지
8	군사학과	신설	2014	2019학년도까지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06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모집단위 신설 제안서

1. 신설 모집단위명(영문명)
2. 신설 사유
3. 신설 필요성 분석
 - ① 정부 및 부울경 자치단체 정책
 - ② 산업과 사회의 수요
 - ③ 대학 특성화 정책과 부합성
 - ④ 대학 경쟁력 강화에 기여도
4. 타 대학 유사학과 현황분석(3개 대학 이상)
 - ① 최근 3년간 타 대학 유사학과의 충원률
 - ② 최근 3년간 타 대학 유사학과의 취업률
 - ③ 타 대학 유사학과의 교육과정
5. 모집단위 신설 세부계획
 - ① 신설학과의 교육과정 및 이수체계도
 - ② 졸업 후 진로 및 취득 자격
 - ③ 신설학과 교원 자격 및 소요 현황
 - 가. 학내 교원 중 신설학과에 부합되는 교원 현황
 - 나. 연차별 교원 소요현황
 - ④ 편제 완성년도까지의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 소요 현황
 - ⑤ 신설학과 계열 및 학위명
 - ⑥ 신설학과 예산 소요 현황